

전임교원특별채용에관한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(특별채용)에 근거하여 전임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채용 자격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1. 국내외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
2.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
3. 국내외 학·연·산·관 등의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
4.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로 학교 발전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 자

②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특별채용 절차) ①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, 후보자의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, 기타 관련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설학과(부)의 경우 또는 학부(과)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②교무처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거나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③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절차는 공개채용의 경우에 준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제4조(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) ①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모집 전공 분야 소속 대학장 및 학과장, 교무처장, 연구처장, 기획처장,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채용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적격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.

③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사유 발생 시마다 따로 구성한다.

제5조(임용) ①이 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하며, 그 임용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.

②학과 또는 학교의 판단에 의해 특별채용의 임용이 시급한 경우는 전항에도

3-2-23~2 제3편 행 정

불구하고 임용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특별채용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계약당시의 전환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3.26)

④총장은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면담을 통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 및 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하고,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